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6.

발 의 자 : 민홍철 · 허성무 · 김승원
이주희 · 박선원 · 이재강
박용갑 · 곽상언 · 김영배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·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제2항에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무허가·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「건축법」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.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

「건축법」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제2항의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,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2항 중 “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, 다른”을 “다른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중 “3년간”을 “2029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3(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) ① (생략)	제10조의3(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,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,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 <u>다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	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유	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202 9년 12월 31일까지-----

효기간 내에 제10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 처리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 한다.	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